

기숙사 운영규정



전북여자고등학교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전북여자고등학교 기숙사를 ‘훈정관(訓貞館)’ 이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통해 질서 의식과 학우간의 우의와 폭넓은 인성을 계발하도록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력 배양과 인재의 산실을 만드는 데 있다.
- 제 3 조 (기본방침) 훈정관은 다음의 주요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운영한다.
1. 학력 신장 및 인격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
 2. 질서를 지키고 협동적인 공동체 생활
 3. 공공시설을 아끼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4. 투명하고 경제적인 운영
 5. 학년별 정원제 실시
- 제 4 조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 학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사 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 학생 선발, 기숙사비 운영, 기숙사운영위원회 활동, 기숙사학생자치회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2018.2.1. 신설)

제 2 장 조 직

- 제 5 조 (운영) 운영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훈정관은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 제 6 조 (운영기간)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에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 7 조 (구성)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기숙사 운영위원회는 매년 3월 기숙사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여 구성한다.
 2. 기숙사 운영위원회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무기획부장(간사 겸임), 학부모 대표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기숙사 사감(2명), 1,2,3학년 부장, 기숙사 제, 행정부장을 보조위원으로 둔다. (2019.3.21. 개정)
 3.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4.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사감은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교무업무는 교무 기획부장이 관장한다.
 5. 학부모 대표는 기숙사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한 6명 중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회장 2학년, 부회장 3학년, 총무 1학년)으로 구성한다. (2019.3.21. 개정)
 6. <삭제> (2019.3.21. 개정)
 7. 기숙사 운영위원 중에서 교장, 교감, 교무기획부장, 사감, 1,2,3학년부장으로 구성된 기숙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기숙사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8.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2018.2.1. 신설)

제 8 조 (임기)

1.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임원 임기는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1년으로 한다. (2019.3.21. 개정)
2. 학부모 대표 중 자녀학생이 퇴사 시에는 자격을 상실하며, 잔여 임기는 동학년의 대의원 중 차 순위 자가 자동 승계한다. (단, 3학년 대입수능 이후 퇴사 시 3학년 학부모 대표는 2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2019.9.25. 신설)

제 9 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회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회비의 징수 금액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결정
4. 기숙사생 정원에 관한 사항(입·퇴사 및 학년별)
5.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 10 조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3월과 11월 중에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1 조 (의결)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 (기숙사학생자치회 구성·운영) (2018.2.1. 신설)

1. 기숙사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를 운영한다.
2. 자치회는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2명), 학년 대표(3명), 호 실장 등으로 구성하며, 세부 내용은 '기숙사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2019.3.21. 개정)
3. 자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치회 회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②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 ③ 학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입사 및 퇴사

제 13 조 (입사자격)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재학생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입사 인원의 80%(1학년 23명, 2학년 24명, 3학년 24명)는 입사 심사일 기준으로 최근 전(前)학기 성적우수자(정기고사40%-전과목 등급평균(단위수 반영)에 의한 석차백분율, 전국연합평가60%-국어, 영어, 수학 원점수 총점에 의한 석차백분율) 순으로 한다. (단, 1학년 1학기의 경우 고입 배정 성적의 석차백분율에 의한 석차 순으로 한다.) (2019.9.25. 개정)
2. 입사 인원의 2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불편자) 등을 우

선 선발하되, 신청 인원이 20%에 미달 시에는 1항의 후보자 중에서 선발한다.
(2018. 2. 1 신설)

- ① 입사 희망자가 20% 이상일 때 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의 신청 비율로 20%내에서 인원 비율을 산정한다.
- ② 원거리 통학자는 전주시 외 지역 출신을 말하며, 통학거리가 비슷할 경우 (동일 시, 군 내) 성적순으로 한다.
- ③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셋째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희망 인원이 넘을 시 성적순으로 정한다. (2019.3.21. 개정)

3. 성적 및 기숙사 또는 학년의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4. 입사자격 제한

- ①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 ②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 받거나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퇴사 당한 자
- ③ 특별반 학생으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자
- ④ 입사 중 질병(단, 질병으로 퇴사한 자 중 완치된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해당 학년에서 심의하여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진 퇴사(성적미달 또는 부적응)한 자와 제18조 2항 ①⑥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 시까지 재입사를 불허하고, ⑦에 해당하는 자는 불입과 같이 재입사 기간을 제한한다.

불입: ① 1,2학년은 다음 학기 재입사를 불허하며, 그 이후에는 입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단, 2학년 2학기에 퇴사당한 경우 재입사 불가하다.)
(2019.9.25. 개정)

- ② 재입사한 후 다시 별점 10점에 도달하면 강제 퇴사되고 졸업 시까지 재입사할 수 없다.
- ③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인성이 좋지 못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본교 교사로부터 입사 불허 요청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4 조 (입사생 인원) 입사인원은 총인원89명 중 1년 32%, 2년 34%, 3년 34%로 하여 3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1~3명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 수능시험 이후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3개월간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학년 비율 50%씩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 15 조 (입사생 선발)

1. 입사생 선발은 12조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의 학년부장 주관 하에 담임교사들의 협의회에서 최종 추천하며, 학기별로 정원을 두어 입사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선발한다.
(결원 시 인원 보충을 위해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2. 기숙사 입사 성적은 학기별로 성적을 산출하며(신입생은 입학성적으로 함), 입사생 선발 시 학기별로 성적을 적용한다.
3. 원거리 통학자 역시 통학시간, 통학거리, 통학불편 등을 기준으로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2018. 2. 1 신설)

4.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신청자 중 성적순으로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2019.3.21. 신설)

제 16 조 (입사시기)

1. 기숙사 정기 입사 시기는 매 학기 초로 한다. 단, 3학년은 학년 초로 하며, 대입 수능이후 1, 2학년은 추가 선발 할 수 있다. (2019.9.25. 개정)
2. 기숙사 비정기 입사는 결원 발생 시 각 학년부장이 후보자 중에서 선발하여 입사시키며, 3학년의 경우 잔여기간이 짧을 때는 2학년 인원으로 충당하여 입사할 수 있다.

제 17 조 (입사생 의무)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학습에 임해야 한다.
2. 사감 교사의 지도에 순응해야 하며, 허락 없이 자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시설물을 내 것처럼 아끼고, 소중히 하며 주위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4.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예절을 지켜 선·후배간 관계를 원만히 해야 한다.
5. 입사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별첨한 기숙사 입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숙사생은 사내 학습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하며, 학원 및 과외를 위한 평일 외박이나 연이은 장기 외박을 삼간다.
7. 장기외박은 불가하다. 다만, 질병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일 이내로 장기외박을 신청할 수 있으며(진단서 및 사유서 제출), 연 2회(총 10일) 이내만 허용한다. (2019.9.25. 개정)
8. 삭제(2015. 3. 11 기숙사 운영위원회)
9. 외박(외출) 시에는 반드시 담임교사가 인정한 외박(외출) 허가서를 제출한다.
10. 기타 전복여고 기숙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제 18 조 (퇴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사를 강력히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각 학년부장과 상담 후 보호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퇴사예정일 7일 전에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담임, 학년부장, 기숙부장, 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함.)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부모에게 사유를 충분히 알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가급적 합의하에) 퇴사 조치한다.
 - ① 사규를 위반하고, 사감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자
 - ②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 ③ 기숙사비(식대) 장기체납자
 - ④ 학업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진 자
 - ⑤ 사감 교사가 판단하여 기숙사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⑥ 기숙사내에서 폭력, 흡연, 음주, 도박, 무단이탈 등의 행위를 한 자.
 - ⑦ 기숙사 생활규정 위반 벌점 규정에 따른 퇴사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자와 학기 내 가정통학이 2회 이상인 자.

⑧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기숙사 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 19 조 (입·퇴사 정리) 학기 중 입·퇴사 사유 발생 시 해당 학년부장이 내부결재 (교무-교감-교장)를 득하여 관리하고, 사감은 기숙사생 입·퇴사 이동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정 및 시설관리

제 20 조 (회비)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사생이 부담하며, 기숙사 회비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기숙사비는 행정실에서 징수하여 집행한다.
2. 기숙사비는 1분기(3~5월), 2분기(6~7월), 3분기(8~11월-대입수능 익일), 4분기(11월 대입수능 이후 첫 일요일~2월) 단위로 징수하며, 자진 퇴사 및 강제 퇴사할 시에는 잔여기간의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2019.9.25. 개정)
3. 전학, 장기간 질병으로(2주 이상 입원) 부득이하게 퇴사할 경우(진단서 첨부)에만 퇴사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분은 기숙사 회비의 50%를 환불한다.
4. 학기 중간에 퇴사로 인한 추가 입사자의 회비는 입소한 날을 포함하여 남은 개월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5. 기숙생이 퇴사하여 환불되지 않은 기숙사 회비는 기숙사내 학생들의 운영비로 활용한다.
6. 기타 필요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21 조 (회계관리)

1. 기숙사비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되, 독립 재산체로 한다.
2. 기숙사비 특별회계연도는 학년도 학기 초에서 수능까지, 수능 후에서 신학년 초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 22 조 (예산 및 결산)

1. 기숙사비의 예산편성은 3월 정기회에서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019.9.25. 개정)
2. 기숙사비의 정산은 당해 학년도 11월 정기회의 시에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9.9.25. 개정)
3. 기숙사비의 결산은 3월 정기회의 시에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예산집행)

1. 예산회계 집행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고, 물품 검수는 회계담당자와 사감이 복수 검수하여야 한다.
2. 기숙사 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제 수당은 행정실에서 예산 편성하여 <기숙

사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한다.

제 24 조 (급식) 기숙사생 식사(조식, 석식)는 학교 급식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급식을 실시할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2019.9.25. 개정)

제 25 조 (위생점검) 기숙사내의 각 호실, 집기, 화장실, 복도 등 전 시설물에 대하여 월 1회 소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6 조 (시설물 점검)

1.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상시 시설 점검을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2. 사감은 기숙사내의 청소, 정리정돈, 위생,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제 27 조 (근무)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한 근무조 편성은 사감이 결정한다.
(단, 필요시는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제 5 장 생활지도

제 28 조 (사감, 부사감)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과 입사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한 인원을 사감으로 임명하며, 사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사감을 임명할 수 있다.(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사감 2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

제 29 조 (사감, 부사감의 의무) 사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학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2. 체계적인 생활계획을 수립하여 입사생을 지도하고, 인원파악 등 학생들의 동태를 항상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기숙사내에서 비행을 근절하고,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요소를 방지한다.
4. ~~입사생들에 대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담임 및 학부모에게 알려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필요시 5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권장한다.), 학생들이 성적을 향상시키고 즐거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5.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이 없게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 복구 조치하여 온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6. 부사감은 사감의 업무 중 일부를 사감으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한다.

제 30 조 (생활지침) 기숙사 생활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기숙사는 내 집처럼, 침실은 내 방처럼 깨끗하고 포근하게 꾸민다.
2. 기숙사 공간을 실력 및 인격지도의 도장으로 한다.
3.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시민 정신을 기른다.

제 31 조 (준수사항) 기숙사생의 생활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도의 시행 세칙을 정하여 생활 태도를 점검한다.

제 6 장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6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9년 6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1월 29일 1차 부분 개정하며, 2015년 3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4일 1차 부분 개정하며, 2017년 2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 부분 개정 및 신설하며, 2018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규정은 2019년 3월 21일 부분 개정 및 신설하며, 2019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본 규정은 2019년 9월 25일 부분 개정 및 신설하며, 2019년 9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8.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9일 부분 개정 및 신설하며, 202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